6.3. 조호물품 제공

- □ 목적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 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 신청 장소
- 치매안심센터 및 분소
- □ 운영방법

0 품목

- 인지강화/인지재활 용품, 미끄럼방지 용품(매트 및 양말, 테이프), 약달력 및 약보관함, 보호대(고관절, 무릎, 허리), 기저귀, 요실금 팬티, 물티슈, 위생매트, 방수매트, 식사용 에이프런, 욕창예방용품(쿠션, 방석, 크림), 노린스샴푸, 간이변기 총 13품목 내에서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제공
 - ※ 지자체별 보유 품목이 상이하므로 전입, 전출 시 서비스 대상자 및 조호물품 담당자에게 충분한 안내 필요
 - ※ 지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13품목 이외 조호물품 제공 가능
- 품목별 제품 업체, 가격 등 센터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하며, 일정 수준의 품질관 리를 위해 고령친화우수제품 우선 구매 권고
 - ※ 자세한 사항은 ANSYS 문서함의 '고령친화우수제품 구매 가이드라인' 참조
- -조호기구 필요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 안내하며, 지자체 예산으로 상황에 맞게 별도 추가지워 가능

○ 제공기간

-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단, 센터의 자체 판단 하에 품목 별로 신청일 기준을 다르게 하여 최대 1년까지 제공할 수 있음)
 - ※ 제공기간 초과 시,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 가능
 - ※ 품목별로 신청일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경우 '[참고] 조호물품(위생소모품) 제공 가이드라인'에서 대분류를 기준으로 지급
 - ※ 지자체 상황에 따라 품목별로 신청일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경우 전입, 전출 시 ANSYS에 품목별 신청일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인수인계 철저 및 관리 요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임이 확인될 경우 제공기간 적용 제외
- 지원대상자의 자격 기준 조사는 대상자별 제공기간 종료시점에 맞춰 1년 마다 실시

[대상자 자격 기준 조사 방법]

- (1) 대상자 자격 관리
 - 지원대상자의 자격 기준 조사는 매 1년 마다 실시할 것을 권고하며, 보건소에서 자체계획 에 따라 조사 시점을 정할 수 있음
- (2) 자격 확인 가능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차상위계층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 연금, 차상 위 지활근로 등 차상위계층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결정 통보문, 확인서 등)
- (3) 자격 확인 방법 (가, 나, 다 중 활용 가능한 방법으로 택 1)
 - 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민원) 시스템 조회
 - ※ 시스템 이용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근거 [서식 6-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받을 것(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 서류 확인)
 - 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존에 권한을 부여받은 치매안심센터 담당자는 별도의 승인·동의서 수령 절차 없이 시스템을 통해 자격 기준 조회 가능
 - 다. 증빙서류 제출
 - · e-하나로민원 또는 행복e음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안내하며, 서류는 확인 후 대상자에게 돌려주거나 폐기함
- (4) 자격 확인 후 조치 방법
 - 자격 기준 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ANSYS-대상자 요약- 특이사항]에 내용 기재 예시) 2024.09.21. e-하나로민원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확인함 (담당자 명)
 - 자격 기준 조사 시 자격기준 변경(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일반대상자)이 확인될 경우, 조호물품 지원은 중단되며 자격 기준이 다시 변경될 경우 재신청하여야 함

○ 제공절차

- 치매환자 상태, 돌봄 상황에 따라 '[참고] 조호물품(위생소모품) 제공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종류 및 수량 참고하여 지급 권고
- -조호물품 수령자 확인을 위해 관련 서식에 수령자의 정보 기입

○ 관련 서식

- -(공통)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서식 6-2] 조호물품 수령 확인 대장 [서식 6-3]
-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식 6-6]

조호물품(위생소모품) 제공 가이드라인

○ 제공 기준

- 치매환자 상태 및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품목 선택 제공 가능
- 제시된 수량은 1년간 치매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한선으로, 치매환자 상태 및 돌봄 환경 고려하여 최대수량 내에서 종류 및 수량 정하여 지급 권고
- 지급기간 1년 내에 대상자가 신청한 물품을 미 수령 했을 경우, 기간만료 전까지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
- 제공주기(월별, 분기별 등)는 권고사항이며, 센터 자체 제공주기 정하여 지급 (예) 겉기저귀 3팩씩 매월 제공, 8팩씩 분기별 제공 등

대분류	소분류	설명	수량/년	비고
인지강화/ 인지재활용 품	인지강화/ 인지재활용품	인지강화 관련 도서, 인지자극 관련 도구 등 두뇌 를 사용하는 용품	2개	
약달력 및 약보관함	약 달력	복용해야하는 약을 일정량 넣어 빠짐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한 용품(달력, 약보관함)	1개	
	약보관함		1개	
보호대	고관절	이동이 편하도록 도와주고, 골절 예방 및 보호하 기 위해 사용하는 용품	소분류 별 1개	
	무릎			
	허리			
기저귀	겉기저귀	성인용 일회용 기저귀(팬티형, 일자형)	24팩	
	속기저귀			
물티슈	물티슈	일회용 물티슈	<u>18개</u>	
위생매트	위생매트	일회용 위생매트	<u>24</u> 팩	
방수매트	방수매트	반복사용이 가능한 방수매트	2개	
식사용 에이프런	식사용 에이프런	일회용이 아닌 반복사용이 가능한 앞치마 형태의 제품	2개	
노린스 샴푸	노린스 샴푸	물 없이 모발 세정을 할 수 있어 와상상태이거나 머리 감기가 어려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용품	271	
간이변기	간이변기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1개	
미끄럼방지 용품	미끄럼방지 매트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매트, 양말, 테이프)	2개	
	미끄럼방지 양말		4켤레	
	미끄럼방지 테이프		1개	
욕창 예방 용품	욕창 예방 쿠션	와상 환자 이거나 장시간 휠체어 등에 앉아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물품	소분류 별 1개	
	욕창 예방 방석			
	욕창 예방 크림			
요실금팬티	요실금팬티	성인용 요실금팬티(일회용/다회용)	24팩(일회용)/ 2개(다회용) 중 택 1	